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63

발의연월일: 2020. 9. 11.

발 의 자:김교흥·정일영·이성만

허종식 • 문진석 • 유동수

신동근 • 이학영 • 송영길

진성준 · 윤관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재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물만 허가권자가 감리비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허가권자 감리비 지급여부 확인대상 건축물을 모든 감리대상 건축물로 확대하여 감리업무의 독립성과 충실한 감리업무수행을 확보하고자 함.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화재안전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하고, 현재 기준이 없는 창호에 대해서도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현행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법원의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체적 분쟁해결기구이나 조정·재정 결과에 대한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아 위원회 설립 목적 달성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건축분쟁위원회의 조정·재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여 건축분쟁위원회 조정·재정 결과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허가권자가 감리비용 지급여부 확인하는 대상 건축물을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건축물에서 모든 감리대상 건축물로 확대(안 제25조제 11항)
- 나. 창호 화재안전기준 마련(안 제52조제4항, 제52조제5항)
 - 1) 창호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함.
 - 2) 창을 통한 인접 건축물로의 화재확산을 방지를 위해 건축물 외벽과 인접대지 경계선 간의 이격 거리가 짧은 경우 창의 화재확산 방지성능을 갖추도록 함.
- 다. 품질인정제도의 도입(안 제52조의5 신설)
 - 1) 자재의 성능 확인뿐 아니라, 공장의 생산과정에서부터 품질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품질관리 능력을 갖춘 자가 자재를 생산할 수 있 도록 하고, 매년 제조·유통·시공 현장을 품질인정기관이 불시 점검함으로써 성능을 확보한 건축자재가 현장에서 시공되도록 품 질인정제도를 도입함.
 - 2)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도입을 통해 공장의 품질관리 상태와 자재의 성능시험 결과를 확인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공장 및 시공현장에 대한 불시점검 진행과 적발된 업체에 대한 인정 취

소 및 벌칙 개정을 통해 보다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도록 함.

라.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재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부여(안 제96조제 4항 및 제99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1항 중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을 "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중 "제11항의"를 "제2항의"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하여야 한다.
-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과 인접대지 경계선 간의 이격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 인 경우,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인접 건축물로의 화재 확산을 방 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 여야 한다.

제5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5(건축자재의 품질인정 등) ① 내화구조,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는 제품의 성능시험 결과 및 공장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 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 인정을 운영하는 기관(이하 "건축자재 품질인정기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건축주 및 건축관계자 등은 제1항에 따라 품질 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만 사용하고,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유통·시공하여야 한다.
- ④ 건축자재 품질인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자재 시험기관, 제조업체, 유통업체와 건축시공현장에서 건축자재의 품질 유지·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⑤ 건축자재 품질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 받은 자재(이하 "품질인정자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 2.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유통・시공하는 경우
- 3. 품질인정자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관리기준 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4.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⑥ 그 밖에 건축자재 품질인정기관이 건축자재의 품질인정을 운영하기 위한 인정절차, 인정기준, 점검기준, 품질관리, 수수료, 실적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6조제4항 중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를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다"로 한다.

제99조 중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를 "그 재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로 한 다.

제106조제1항 중 "제25조제3항"을 "제52조의5제3항"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품질인정을 한 자

제113조제1항제4호 중 "제52조의3제2항"을 "제52조의3제2항 및 제52조의5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제52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①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① 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공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사 감리자를 지정하거나 제2항
의 건축주는 제21조에 따른 착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
공신고를 하는 때에 감리비용	<u>자를 지정하는</u>
이 명시된 감리 계약서를 허가	
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	
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	
하는 때에는 감리용역 계약내	
용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	
는 감리 계약서에 따라 감리비	
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①·③ (현행과 같음)
⑭ 허가권자는 <u>제11항의</u> 감리비	<u> 14 제2항의</u>
용에 관한 기준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u>.</u>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
	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화에

<신 설>

<신 설>

지장이 없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과 인접대지 경계선 간의 이격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인접 건축물로의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52조의5(건축자재의 품질인정 등) ① 내화구조, 방화문, 복합 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는 제품의 성능시험 결과 및 공장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 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 인정을 운영하는 기 관(이하 "건축자재 품질인정기 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건축주 및 건축관계자 등은 제1항에 따라 품질 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만 사용하고, 인정반은 내용대로 제조·유통·시공하여야 한다.
- ④ 건축자재 품질인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자재 시 험기관, 제조업체, 유통업체와 건축시공현장에서 건축자재의 품질 유지·관리 의무 이행 여 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⑤ 건축자재 품질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자재(이하 "품질인 정자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 2.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 조·유통·시공하는 경우
- 3. 품질인정자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

(생략)

-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 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 날인 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 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 된 것으로 본다.
- 제99조(재정의 효력 등) 재정위 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 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 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 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으로부 터 그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4.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
- ⑥ 그 밖에 건축자재 품질인정 기관이 건축자재의 품질인정을 운영하기 위한 인정절차, 인정 기준, 점검기준, 품질관리, 수수 료, 실적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제96조(조정의 효력) ① ~ ③ 제96조(조정의 효력) ① ~ ③ (혀해과 간을)

	(12 0	,		/				
	4 -							
				조정	[서의		내용	은
	재판성	}- :	화해	와	동일	한	효력	을
	<u>갖</u> 는디	<u>}</u> .						
제	99조(재경	형의	효	부 등)		

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 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u>당사자</u>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 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06조(벌칙) ① 제23조, 제24조 제1항, 제52조의3제1항, <u>제25조</u> 제3항 및 제35조를 위반하여 설계·시공·공사감리 및 유지·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감리자·시공자·제조업자·유통업자·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생략)

제10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신 설>

그 재정 내
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
력을 갖는다.
제106조(벌칙) ①
<u>제52조의5</u>
<u>제3항</u>
<u>.</u>
② (현행과 같음)
제108조(벌칙)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제5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② (생략)

- 제11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3. (생략)
 - 4. <u>제52조의3제2항</u>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
 - 5. (생략)
 - ② ~ ④ (생 략)

품질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함에도 품질인정을 한 자
② (현행과 같음)
제113조(과태료)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제52조의3제2항 및 제52조의5
제4항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